

【제1편】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지역여건

제 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1. 수립 배경 및 주체

▣ 지방재정의 체계적운용 필요

-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 수립,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
-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(다년도 예산, Multiyear Budget)
-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방재정지원계획을 준수하고,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-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, 지방정부는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
- 지방재정의 체계적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,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

▣ 계획수립 주체 : 자치단체

- 자치단체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, 지방의회 보고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
-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을 종합 분석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·발표

2. 연혁 및 근거법령

-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 (지방재정법 제16조) : '88. 4. 6
-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구성 근거 마련 : '91. 12. 31
- 매년 연동화계획(Rolling plan)으로 운영 : '93년 이후
- 국가와 지방, 계획과 예산이 상호 연계되도록 관계부처협의 : '95년 이후
-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정
→ '95년 01월 13일 조례 제 013호

♣ 지방재정법

제16조(중·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·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

제16조의2(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)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

♣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

위원장 - 부시장

위 원 - 지방의회의원-3명, 대학교수-2명, 지역대표-2명, 국장-4명

3. 계획수립의 범위 및 내용

■ 공간적 범위 : 군산시 전역(378.19km²)

■ 시간적 범위 : 2005~2009년 (5년)

2005	2006	2007	2008	2009
실적치	발전계획	발전계획	발전계획	발전계획

■ 내용적 범위

-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에 반영되는 예산
(국가·민자 등 타 기관 시행사업은 계수에서 제외)

■ 주요내용

- 재정목표 :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·전략 등 기본방향제시
- 재정전망 : 세입·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
- 투자계획 : 6개 분야 (일반행정, 문화·관광·체육, 경제산업, 보건복지, 환경수질, 지역개발)를 중심으로 정책방향 및 향후 투자계획 수립

■ 향후활용계획

- 정책결정시 중기적인 시계 확보 및 재정투자방향 제시
-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수립의 기준 제공
- 국고보조금신청, 투·융자심사, 지방채 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

4. 계획수립과정

